
- 제2대티터널 도로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6.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목 차

제1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I.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II. 분야별 평가기준
- III. 가점 및 감점평가기준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 I. 일반사항
- II.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첨부 2> 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 <첨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첨부 5> 용역수행성과 세부평가기준
- <첨부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기준

제1장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I.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참여기술인	소 계	[60.0]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7.6	절대평가
	(가) 해당분야 경력	15.6	절대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	10.8	절대평가
	(다) 교육훈련	1.2	절대평가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8.8	절대평가
	(가) 해당분야 경력	16.8	절대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	10.8	절대평가
	(다) 교육훈련	1.2	절대평가
	기술지원기술인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 미평가 (점수배분)*
(가) 등급	-		
(나) 해당분야 경력	-		
(다) 교육훈련	-		
(3) 참여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6	상대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소 계	[12.0]	
	(1) 유사용역 수행실적	9.6	절대평가
	(2) 용역수행성과	2.4	절대평가
신용도	소 계	[16.6]	
	(1) 영업정지(업무정지)	7.0	절대평가
	(2) 벌점	6.0	절대평가
	(3) 재정상태 건실도	3.6	절대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1.4]	
	(1) 개발실적·활용실적	3.0	절대평가
	(2) 투자실적	8.4	절대평가
교체빈도	소 계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로 미평가 (점수배분)**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2) 참여기술인	-	
합 계		[100]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절대평가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 '기술지원기술인' 미평가점수(부산시안: 5점)는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3) 참여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균등 분배(부산시안 대비 20% 추가)

** '교체빈도' 미평가점수(부산시안: 5점)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재정 건실도 포함)과 참여기술인의 사업참여 태도 및 책임감, 건설기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실적도에 중요도를 두어 각 항목(유사용역 수행실적, 용역수행성과, 벌점, 재정상태 건실도, 투자실적)에 부산시안 대비 20% 씩 추가 분배

II.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참 여 기 술 인		[60]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기준 : 왕복 4차로 이상의 터널 5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4차로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3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연장 1km 이상 도로에 대한 설계 또는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로 및 공항분야 특급기술인으로,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인정범위: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 해당분야: 왕복 4차로 이상의 터널 5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4차로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3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연장 1km 이상 도로사업 - 경력기간에 따른 평가점수 <table border="1"> <tr> <td>경력기간 (단위: 년)</td> <td>15 이상</td> <td>15 미만 13 이상</td> <td>13 미만 11 이상</td> <td>11 미만 9 이상</td> <td>9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5.6</td> <td>14.0</td> <td>12.4</td> <td>10.9</td> <td>9.3</td> </tr> </table> 	경력기간 (단위: 년)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점 수	15.6	14.0	12.4	10.9	9.3											
	경력기간 (단위: 년)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점 수	15.6	14.0	12.4	10.9	9.3																				
(가) 해당분야 경력	15.6																									
(나) 직무분야 실적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이외의 경력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계분야 포함(배점: 7.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인정범위: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 설계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인정 - 직무(전문) 분야: 토목(도로 및 공항) - 참여기간에 따른 평가점수 <table border="1"> <tr> <td>참여기간 (단위: 년)</td> <td>15 이상</td> <td>15 미만 13 이상</td> <td>13 미만 11 이상</td> <td>11 미만 9 이상</td> <td>9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7.2</td> <td>6.4</td> <td>5.7</td> <td>5.0</td> <td>4.3</td> </tr> </table> ② 설계분야 외(배점: 3.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인정범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 설계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인정함 - 직무(전문) 분야: 토목(도로 및 공항) - 참여기간에 따른 평가점수 <table border="1"> <tr> <td>참여기간 (단위:년)</td> <td>7 이상</td> <td>7 미만 5 이상</td> <td>5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3.6</td> <td>3.2</td> <td>2.8</td> <td>2.5</td> <td>2.1</td> </tr> </table> 	참여기간 (단위: 년)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점 수	7.2	6.4	5.7	5.0	4.3	참여기간 (단위:년)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3.6	3.2	2.8	2.5	2.1
참여기간 (단위: 년)	15 이상	15 미만 13 이상	13 미만 11 이상	11 미만 9 이상	9 미만																					
점 수	7.2	6.4	5.7	5.0	4.3																					
참여기간 (단위:년)	7 이상	7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3.6	3.2	2.8	2.5	2.1																					
(다) 교육훈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 이상(0.6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6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및 점수배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공항분야 1인(30%), 토질·지질분야 1인(30%), 토목구조분야 1인(30%), 교통분야 1인(10%) ○ 배치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복 4차로 이상의 터널 5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4차로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3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연장 1km 이상 도로에 대한 설계 또는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해당 분야별 특급기술인으로,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인정범위: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 해당분야: 왕복 4차로 이상의 터널 5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4차로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3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연장 1km 이상 도로사업 - 경력기간에 따른 평가점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경력기간 (단위: 월)</td> <td>48 이상</td> <td>48 미만 42 이상</td> <td>42 미만 36 이상</td> <td>36 미만 30 이상</td> <td>30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16.8</td> <td>15.1</td> <td>13.4</td> <td>11.7</td> <td>10.0</td> </tr> </table> 	경력기간 (단위: 월)	48 이상	48 미만 42 이상	42 미만 36 이상	36 미만 30 이상	30 미만	점 수	16.8	15.1	13.4	11.7	10.0											
	경력기간 (단위: 월)	48 이상	48 미만 42 이상	42 미만 36 이상	36 미만 30 이상	30 미만																				
	점 수	16.8	15.1	13.4	11.7	10.0																				
(나) 직무분야 실적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이외의 경력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계분야 포함(배점: 6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인정범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 설계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인정 - 직무(전문) 분야: 토목(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교통(교통)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분야와 동일한 직무(전문) 분야 실적에 한함 - 참여기간에 따른 평가점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참여기간 (단위: 년)</td> <td>12 이상</td> <td>12 미만 10 이상</td> <td>10 미만 8 이상</td> <td>8 미만 6 이상</td> <td>6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② 설계분야 외(배점: 4.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 인정범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 ※ 설계는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인정함 - 직무(전문) 분야: 토목(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교통(교통) ※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참여하는 분야와 동일한 직무(전문) 분야 실적에 한함 - 참여기간에 따른 평가점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참여기간 (단위: 년)</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td> </tr> <tr> <td>점 수</td> <td>4.8</td> <td>4.3</td> <td>3.8</td> <td>3.3</td> <td>2.8</td> </tr> </table> 	참여기간 (단위: 년)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참여기간 (단위: 년)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4.8	4.3	3.8	3.3	2.8
참여기간 (단위: 년)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8 이상	8 미만 6 이상	6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참여기간 (단위: 년)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점 수	4.8	4.3	3.8	3.3	2.8																					
(다) 교육훈련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 2주 이상(0.6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6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참여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6	<p>○ 참여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로 및 공항) 1인을 대상으로 한다.</p> <p>-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p> <p>※ 평가 서류 미제출 시 “0” 점 처리함.</p> <p>-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25.7.9.)”에 따른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첨부1, 6)에 따라 상대평가 시행</p> <p>- 평가위원회에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수’, ‘우’, ‘미’, ‘양’, ‘가’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첨부1)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p> <table border="1" data-bbox="555 658 1433 752"> <tr> <td>평가대상</td> <td>배점한도(용역비 20억원 미만 적용)</td> </tr> <tr> <td>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td> <td>3.6점</td> </tr> </table>	평가대상	배점한도(용역비 20억원 미만 적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3.6점								
평가대상	배점한도(용역비 20억원 미만 적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3.6점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2.0]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9.6	<p>○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 인정범위:</p> <p>- 해당분야: 왕복 4차로 이상의 터널 5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4차로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3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연장 1km 이상 도로사업에 한함</p> <p>-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p> <p>○ 수행실적에 따른 평가점수</p> <table border="1" data-bbox="555 1144 1433 1267"> <tr> <td>수행실적 (억원)</td> <td>50 이상</td> <td>50 미만 45 이상</td> <td>45 미만 40 이상</td> <td>40 미만 35 이상</td> <td>35 미만</td> </tr> <tr> <td>점수</td> <td>9.6</td> <td>8.6</td> <td>7.6</td> <td>6.7</td> <td>5.7</td> </tr> </table> <p>※ 해당분야 외(도로사업에 한함)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p> <p>※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과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100% 인정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실적은 70%만 인정함</p> <p>○ 산정방법(예시)</p> <p>☞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p>	수행실적 (억원)	50 이상	50 미만 45 이상	45 미만 40 이상	40 미만 35 이상	35 미만	점수	9.6	8.6	7.6	6.7	5.7
	수행실적 (억원)	50 이상	50 미만 45 이상	45 미만 40 이상	40 미만 35 이상	35 미만									
점수	9.6	8.6	7.6	6.7	5.7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4	<p>○ 참여업체가 부산광역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또는 설계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성과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p> <table border="1" data-bbox="544 1697 1433 1809"> <tr> <td>용역평가 결과</td> <td>95점 이상</td> <td>95점 미만 92점 이상</td> <td>92점 미만 89점 이상</td> <td>89점 미만 86점 이상</td> <td>86점 미만</td> </tr> <tr> <td>점수</td> <td>2.4점</td> <td>2.1점</td> <td>1.9점</td> <td>1.6점</td> <td>1.4점</td> </tr> </table> <p>-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를 말한다.</p> <p>-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는 “1.9”의 점수를 부여하며, 세부평가기준은 ‘첨부5’와 같다.</p> <p>※ 용역평가결과를 미제출하거나, 고의 누락이 확인 될 경우 해당항목 “0” 점 처리</p>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4점	2.1점	1.9점	1.6점	1.4점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4점	2.1점	1.9점	1.6점	1.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신 용 도		[16.6]																				
	(1) 영업(업무) 정지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p><신용평가등급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body> <tr> <td>회사채</td> <td>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 이상</td> <td>A3- 미만 B- 이상</td> <td>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 이상</td> <td>BBB- 미만 B- 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6</td> <td>3.3</td> <td>2.5</td> <td>0</td> </tr> </tbody> </table>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6	3.3	2.5	0
회사채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6	3.3	2.5	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1.4]																																														
	(1) 기술개발·활용 실적	3.0	<p>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p> <p>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p> <p>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 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p> <p>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기준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개발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2.0점/건당</td> </tr> <tr> <td rowspan="2">활용실적</td> <td>건설신기술</td> <td>0.5점/건당</td> </tr> <tr> <td>건설기술에 관한 특허</td> <td>0.3점/건당</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6">가 중 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h>0.5</th> </tr> </thead> <tbody> <tr> <td>실적건수(건)</td> <td>5 이상</td> <td>5 미만 4 이상</td> <td>4 미만 3 이상</td> <td>3 미만 2 이상</td> <td>2 미만 1 이상</td> <td>1 미만 0.3 이상</td> </tr> <tr> <td>실적금액(억원)</td> <td>20 이상</td> <td>20 미만 18 이상</td> <td>18 미만 16 이상</td> <td>16 미만 14 이상</td> <td>14 미만 12 이상</td> <td>12 미만 10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5년 미만</th> <th>5년 이상 10년 미만</th> <th>10년 이상 20년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인정률</td> <td>100%</td> <td>80%</td> <td>60%</td> </tr> </tbody> </table> <p>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p>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 이상	실적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0.3 이상																																										
실적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	100%	80%	6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투자실적	8.4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1.50% 이상</td> <td>1.50% 미만 1.25% 이상</td> <td>1.25% 미만 1.00% 이상</td> <td>1.00% 미만 0.75% 이상</td> <td>0.75% 미만 0.50% 이상</td> <td>0.5%미만</td> </tr> <tr> <td>점수</td> <td>8.4</td> <td>8.1</td> <td>7.9</td> <td>7.6</td> <td>7.4</td> <td>7.2</td> </tr> </table>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p>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수	8.4	8.1	7.9	7.6	7.4	7.2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0.5%미만											
점수	8.4	8.1	7.9	7.6	7.4	7.2											

Ⅲ. 가점 및 감점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제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p>○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p> <p>-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p> <p><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tr> <td>가중치</td> <td>1.0</td> <td>0.8</td> <td>0.5</td> </tr> <tr> <td>절감금액</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r> <tr> <td>절감비율</td> <td>1.0% 이상</td> <td>1.0% 미만 0.5% 이상</td> <td>0.5% 미만 0.1% 이상</td> </tr> </table> <p>*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p> <p>*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p> <p>*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p> <p>*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p> <p>*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p> <p>*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관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p style="text-align: center;">< 부 패 행 위 ></p> <p>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관한 사항

I.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평가서 작성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5.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해지)하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기술인을 교체한다.
 - 가. 참여기술인을 “7”에 따른 업무중첩도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PQ에 응모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하며, 이하 나목에서 같다)의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5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도로 및 공항)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 사업기간이 1개월(31일) 미만인 경우는 업무중첩에서 제외함

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첨부1> 기준에 따라,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인을 평가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도로 및 공항분야 1인

※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한다.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개 분야 4인

- 도로 및 공항(30%), 토질·지질(30%), 토목구조(30%), 교통(10%) 각 1인

※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 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 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 3)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 제1장의 II.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 : 왕복 4차로 이상(공통사항)의 터널 연장 500m 이상 도로 또는 지하차도 연장 300m 이상 도로 또는 연장 1km 이상 도로 사업

- 해당분야 외(도로사업 포함) : 해당분야의 60% 적용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 제1장의 II.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직무(전문)분야 : 토목(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도시·교통(교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마.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 분야의 공사·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2)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 5)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로 및 공항) 및 분야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은 왕복 4차로 이상의 터널 5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3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연장 1km 이상의 도로에 대한 설계 또는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아래 ‘나’항목 참조)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민간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전문)분야에 대한 용역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 왕복 4차로 이상의 터널 5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4차로 이상의 지하차도 연장 300m 이상 도로 또는 왕복 4차로 이상의 연장 1km 이상 도로사업

- 그 외 해당 직무(전문)분야 : 토목(도로사업에 한함)

다. 공동도급시에는 업체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여 실적을 산정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 12. 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 12. 31.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 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pm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 <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I.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 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II.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III.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div>								
발 주 기 관 장					직인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용역수행성과 세부평가기준

1. 용역수행성과 절대평가 기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4점	2.1점	1.9점	1.6점	1.4점

- 1) 공동이행방식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용역 평가결과 평균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2)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1.9”의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2. 용역수행성과 증빙자료 : 발주청 평가점수 통보 공문, CSI 출력물 등 제시

※ CSI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1) CSI 출력물 제출 시 발주청과의 계약서 사본 제출
- 2) 용역수행성과가 없는 업체도 CSI 출력물 제출

3. 적용방법(예시)

- (가정) A사(70%), B사(20%), C사(10%) 공동이행일 경우

1) A사, B사, C사 모두 용역평가 실적 있는 경우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C사 95.4점으로 가정

$$(97.2 \times 0.7) + (94.6 \times 0.2) + (95.4 \times 0.1) = 96.42 \text{ 점}$$

→ 96.42점으로 2.4점

2) A사, B사는 용역평가 실적 있고, C사는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 용역평가 평균점수 A사 97.2점, B사 94.6점 가정, C사 용역평가 실적없는 경우 “1.9”점수 부여 가정

$$\{(97.2 \times 0.7) / 0.9\} + \{(94.6 \times 0.2) / 0.9\} = 96.62 \text{ 점}$$

→ $(2.4 \text{ 점} \times 0.9) + (1.9 \text{ 점} \times 0.1) = 2.35 \text{ 점}$

3) A사, B사, C사 모두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 용역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 1.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기준

구분	지 표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한 경우
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경우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 (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경우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실한 제안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내용의 경우